

Jisung Horizon Newsletter

August 2009 Vol.2. No.8

01 법률칼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김범희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세계경제위기와 중국경제
(명한석 변호사)

07 생생러시아

- 러시아 법상 파산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09 Vietnam LIVE!

- BT, BOT 사업의 투자허가절차에 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JS HORIZON Vietnam Hanoi
법인장)

14 주목! 이 판례

-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취득자의 관계(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판결)

18 최신법령

- 비금융주력자에대한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규제
완화 등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신설 등

20 업무동향

- 포스코의 베트남 ASC M&A 자문 업무
- 대한주택공사 미분양펀드 컨소시엄 법률자문
- 강남 ING타워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리조트 분양업무 관련 자문

25 지평지성 단신

- 금태섭 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2회 월례발
표회 참석
- 김도요 변호사, Columbia Law School, LL.M.
과정 유학
- 정철 변호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과정 유학
-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 쉬어매드니스(Shea
Madness) 공연

27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박용대 변호사

28 영입인사

- 정민정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김범희 변호사

지난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IT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이 됨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 또한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최근 우리 법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판시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문저작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어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적은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규약이나 해법 등도 보호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양하므로 외형상 틀려 보이는 코드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유사 여부에 대한 감정은 일반 어문저작물에 비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감정기관이 행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113842(병합) 판결은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 간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하여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현을 한줄한줄씩 비교하여 복제 등에 따른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달라 그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그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1. 의거성 : 소위 접근가능성 및 침해자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야 함(여기서 접근가능성은 침해자의 원 프로그램의 소지 여부, 코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된 코드에의 접근 가능성, 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파일의 수집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실질적 유사성 : 사상과 표현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창작적 표현형을 추출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우선 추상화 및 여과 과정(주1)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인 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야 함,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이 제약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이 판결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안에서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POS 프로그램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6가합 92887 판결은, 시간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위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소위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속성상 표현이 제한되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능적 저작물에서 장치의 구성 등이 달라져 어쩔 수 없이 표현이 변경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없으며, 이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의거성을 판단할 때와는 달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다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대비 대상인 프로그램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주2)하고 이 부분만을 대비 대상인 프로그램과 대비하는 주장과 입증(감정 등)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정 결과 상당히 높은 유사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만약 이 사건의 상소심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된다면 이는 향후 프로그램저작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침해 분쟁에서 원고나 소송대리인이 주장이나 입증을 할 때 매우 유념하고 주의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주]

(주1) 비교대상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주2) 일반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그 분량이 방대하고 전체 구성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 중에서 창작적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 있고, 나아가 피고 프로그램의 구조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원고의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원고의 프로그램에서 창작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아 감정 대상으로 특정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점이 실무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세계경제위기와 중국경제 - 중국투자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

명한석 변호사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중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7~8%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당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그 사전차단을 위한 조치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중국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 소로스는 중국을 "긍정적인 힘 (positive force)"으로 비유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도록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7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중국의 성장엔진 자체가 충실한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는 한편, 4조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십조', '국구조' 등의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도 상당히 늘어났어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대중국투자가 상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당히 감소하였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인은 첫째,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경색 및 위기 회피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시장이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주체가 자금사정이 안좋아 투자여력이 없고, 투자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위안에 120원~130원 정도하던 환율이 지금은 200원대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투자를 하려면 국내 조달 금액은 거의 2배에 달하여, 수익성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중국투자의 큰 일익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거의 대중국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물론 다른 투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슬슬 중국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누가 뭐래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중국은 상당히 법제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법적인 근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법제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보다 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탈법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중국을 판시의 나라라고 하여 인적 네트워크만 좋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판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법령은 상당히 자주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입법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야 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만 규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된 상황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사항도 행정부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법령의 특색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도 행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부동산 관련 입법만 보더라도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이 이루어진 이후 2007년 외자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외채 제한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그러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행정부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령의 제정, 개정, 변경에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법령해석 및 선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경우 지방마다 통일적으로 규율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에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다”는 말이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 이 칼럼은 한국상회에서 발간하는 [코참상하이](#) 2009년 8월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JS Horizon

(생생러시아)

러시아 법상 파산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1\)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6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2\)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7월호\)](#)

파산절차

채무자의 지불능력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사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Инвентаризация имущества)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Конкурс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이 선임됩니다. 채무자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은 청산재단(конкурсная масса)을 구성하고, 청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은 도산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또한 배당절차에 있어 각 순위별 채권액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해 후순위 채권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순위 내에서도 모든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비용, 관리인 보수, 도산절차 관련 비용은 아래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도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i) 1순위 :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компенсация морального вреда)
- (ii) 2순위 : 퇴직금, 미지불 임금, 저작권료
- (iii) 3순위 : 기타 일반채권

한편 담보권자는 담보물과 관련하여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나 외부관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 중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시키고 외부관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상사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승인(ходатайства собрания кредиторов)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종료 및 외부관리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따른 배당이 종결된 이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경과보고서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사법원은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에 대상법인의 소멸이 등기되며, 대상법인 소멸등기가 경로되는 시점에 파산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의절차

화의절차는 제1회 채권자집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도산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의계약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과반수와 담보권자 전원이 화의에 동의하여야 하고, 상사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화의계약은 파산절차에서 적용되는 1순위 및 2순위 배당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화의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절차와 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화의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화의계약의 해지없이 소송을 통하여 화의약정에서 규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BT, BOT 사업의 투자허가절차에 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베트남 정부에서는 매년 MPI의 주관 하에 BT, BOT 사업의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고, 이 분야에의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직접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위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보면, 교량건설, 고속도로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 아직 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절실한데, 이를 건설할 수 있는 투자자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년에 GS E&C에서 호치민시 띠선녓 공항과 투득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공사를 BT 사업 방식으로 수주한 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BT 혹은 BOT 방식의 투자에 대한 허가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투자조건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투자허가를 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이 투자주체가 되는, BOT 방식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BT 혹은 BOT 계약을 통한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BT, BTO, BOT 계약에 기초한 투자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78-2007-ND-CP dated 11 May 2007 ON INVESTMENT ON THE BASIS OF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AND BUILD-TRANSFER (BT) CONTRACTS)을 중심으로 BT, BOT 사업의 투자허가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 BOT, BTO 투자계약이란

BOT(Build-Operate-Transfer)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하며,

BTO(Build-Transfer-Operate) 계약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형식을 말하며,

BT(Build-Transfer) 계약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2. 투자자의 요건

투자자는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수행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금은;

- ①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 ②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이상이고 1조 5천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20% 이상은 되어야 하며,
- ③ 총 투자자본이 1조 5천억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업목록의 작성 및 공표

베트남 각 관계부처와 지방성정부 등은 매년 BOT 계약 등에 기초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해서 MPI를 비롯한 관련 부서, 지방성 정부에 제출해서 그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부처 및 각 성정부는 해당 웹사이트와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그 리스트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트에 기초해서, 해당 기관은 우선협상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및 입찰 참여 초청 서류 작성을 위해 국내 또는 외국의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우선 협상대상자의 선정

BT, BOT 사업의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기관은 국내 또는 국제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입찰에 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쳤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오직 한 투자자밖에 없을 경우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상품과 용역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입찰절차 없이 특정 투자자와 BT 계약 또는 BOT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반포한 BOT등 사업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정 투자자는 프로젝트 제안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일정한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당해 투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프로젝트 계약(Project Contracts)의 체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투자자는 건설법에 기초해서 설비건설 투자계획(Investment Project)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후 투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러한 투자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계약, 시공계약, 기계 및 설비의 설치계약, 컨설팅서비스계약, 감리계약, 원자재의 구매계약, 제품 및 용역의 판매 계약, 기술용역 제공계약, 대출계약, 자산의 담보제공 계약 등의 계약들이 프로젝트 계약 협상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 협상을 통해서 체결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체
-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및 실행 일정, 자금원
- 설비의 용량 및 기술 수준, 설비수준을 담보할 감리 관련 조항
- 환경 및 자연 자원 보호 관련 조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토지 및 인프라 설비 사용 조건, 설비 건설 일정 및 투자 기업 총 운영 기간
- 각 주체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
- 각종 가격 및 수수료, 기타 비용에 관한 조항
- 설비의 정상적인 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
- 설비의 설계, 장착, 시공, 인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자문 및 감리에 관한 조항
- 이전될 설비의 기술적인 조건, 운영 상태, 질적 상태, 설비의 평가에 사용될 원칙, 설비 이전 절차에 관한 조항
- 프로젝트 계약의 초기 해지 조건 및 프로젝트 계약 양도 조건에 관한 조항
- 분쟁 해결 방법
- 의무 위반 관련 조항
- 관련 정부기관의 지원 및 보증 관련 조항
- 설비의 이전 후 설비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경영진 및 기술진들의 훈련에 대한 투자자 및 프로젝트 기업의 책임 관련 조항

6. 투자허가서의 발부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후,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계약서 및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첨부해서 투자허가신청서를 MPI에 제출해야 하며, MPI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허가서를 심사한 후 투자허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 투자허가서의 발부를 통해 투자자, 프로젝트 기업(Project Enterprise), 프로젝트의 대상 및 위치,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각종 투자 혜택 관련 사항, 정부의 보증이 있다면 그러한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이 확정되게 되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이 투자허가서는 프로젝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겸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민법상의 기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이 1조5천억동 이상인 경우 1%, 7천500억동 이상 1조 5천억동 미만인 경우 2%, 7천500억동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투자 혜택

BOT 기업과 BTO 기업은 프로젝트 시행 전 기간 동안 법인세법에 대하여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의 경우, 법인세율 25%가 아닌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경우 수출입 관세를 면제받게 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는 기술이전 또는 로열티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업은 프로젝트 시행 전기간 동안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면제 받게 됩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취득자의 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판결

1. 들어가며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기간 점유하면,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현상대로 권리를 인정해 사회질서 안정을 도모하고 점유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할 뿐 아니라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데에 제재까지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우리 민법도 취득시효제도를 받아들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대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가 되기 전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도 이와 관련된 논점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성되어 오던 대법원 판례를 다시 변경한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를 1961년 1월경부터 점유하여 여태 사용하고 있었고, 20년이 되는 1981년 1월경에 취득시효를 완성(이하 '1차 취득시효완성')하였는데 등기는 미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1982년 2월경 B 명의로, 1988년 3월경 C명의로, 1988년 9월경 다시 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D가 등기 명의자입니다.

A가 1차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지 소유자는 몇 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A가 D에게 2차 취득시효완성(이하,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소유자 변경된 후 재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2차 취득시효완성'이라고 합니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3. 종전 판례

종래 판례는,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왔습니다. 대표적 판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이런 종래 판례에 의하면, A는 D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원심도 기존 판례에 따라서 A의 D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상 판례의 태도

대상 판결은 종래 판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때,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 요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A는 D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검토

대상판결에는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취득시효제도를 해석할 때에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형식주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종전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의 비판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주장으로는,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만일 당초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점유를 개시했다면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고 애초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이 보충의견으로 재반박하고 있으나,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의견이 들고 있는 논리를 따르더라도 2차 취득시효에서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은 1차 취득시효의 경우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취득시효기간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므로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점유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때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때에 그 기산점을 제3취득자가 생긴 시점으로 잡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6. 나오며

종래 판례는 1차 취득시효 진행과 2차 취득시효 진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서까지 취득시효제도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변경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합니다. 더구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점유를 더 오래한 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마저 생기게 되므로 이번 판례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니다. 다만 1차 취득시효완성 때와는 다른 잣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의 기산점을 삼는 문제에 대하여는 차후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판결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신법령)

1.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2조 제1항 및 제9조 등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 제20조, 제25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신설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5. 법 제39조를 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성 심사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6.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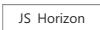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1.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009. 7. 3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받은 현금지원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개정하여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및 별표2를 신설하여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1. 시행)

3.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신설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1. 2009. 5. 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포스코 베트남 ASC M&A 자문 업무

지난 7월 17일, 포스코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베트남 스테인리스 냉연 및 열연 생산 업체인 '아시아 스테인리스 (ASC, Asia Stainless Corporation)'를 인수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ASC 인수와 관련된 법률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Deal closing을 위한 제반 법률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 포스코, 인도에 아연도금강판 공장](#)
- [파이낸셜 뉴스 - 포스코 '스테인리스 냉연' 갈증 해소](#)
- [데일리안- 포스코, 베트남 스테인리스 냉연업체 인수](#)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공수한 미국변호사



정민정 미국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

J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대한주택공사 미분양펀드 컨소시엄 법률자문

지난 5월 27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하는 첫 미분양펀드의 우선협상 금융주관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 금융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우리투자증권-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컨소시엄과 하나-신한 컨소시엄, KB-동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우리투자증권-맵스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을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미분양펀드 금융주관사 선정...하나·신한, 미래에셋, KB·동부](#)
- [머니투데이 - 미분양펀드, 우선협상 금융주관사 3곳 선정](#)
- [아시아경제 - 다시 주목받는 '부동산펀드'](#)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김태일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강남 ING타워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제공

KB부동산신탁은 9일 부동산사모펀드인 `KB와이즈스타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ING타워를 4000억원에 매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한 SC제일은행, 삼성화재 등을 대리하여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 강남 ING타워 사모펀드에 팔려](#)
- [동아일보 - 서울 ING타워 4000억원에 팔렸다](#)
- [매일경제 - KB부동산신탁, ING타워 4000억에 매입](#)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류용현 회계사

JS Horizon

(업무동향)

지평지성, 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 리조트 (Casa del Agua 제주) 분양업무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 기능을 하게 될 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 리조트(Casa del Agua 제주)의 분양업무 관련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 카사 델 아구아 리조트는 건축의 거장인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설계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대규모 주거시설로, 지난 7월 7일 중국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이엠 프로퍼티(AM Property Management)와 전체 20% 이상(매입금액 370억원)에 달하는 물량에 대한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분양도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5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中 부동산업체, 제주 리조트 대량 매입](#)
- [매일경제 - 중국인이 제주 리조트 40채 샀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구상수 회계사



류용현 회계사



김홍영 전문위원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금태섭 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2회 월례발표회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태섭 변호사)

지난 7월 24일 삼성동 포스코센터 비즈니스 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제2회 월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특징과 과제』라는 주제로 1부는 서울 고등법원의 손철우 판사가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특징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2부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금태섭 변호사가 '크로포드 판결 이후의 미국 대법원판례의 경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판례의 변화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S Horizon

김도요 변호사, Columbia Law School, LL.M. 과정 유학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

지평지성 금융파트의 김도요 변호사가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Program) 연수차 6월 출국하였습니다. JS Horizon

정철 변호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과정 유학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지평지성 회사파트의 정철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Program) 연수차 7월 출국하였습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 쉬어매드니스(Shea Madness) 공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윤홍배, 송한사, 마상미, 유민권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관객참여형 폭소추리극 '쉬어매드니스(Shea Madness)'에서 4명의 용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열연하였습니다.

'쉬어매드니스'는 대학로를 포함해 전 세계 22개 도시에서 인기리에 공연 중인 작품으로, 관객이 직접 극에 참여하여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현재 '쉬어매드니스 시즌 4'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OSEN 생활/문화 - 연극 '쉬어매드니스'에 진짜 변호사들이 떴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박용대 변호사
ydpark@js-horizon.com

□ 학력사항

- 경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경력사항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박용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 King's College London에서 연수를 마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를 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지식을 보태어 떠나기 전 10년간 꾸준히 해 왔던 금융거래 분쟁, 경영권 분쟁, 회사 업무 분쟁, 세무 분쟁, 부동산 분쟁 등에 더욱 매진하여 고객님께 더욱 필요하고 믿음이 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정민정 미국변호사
mcchung
@js-horizon.com

□ 학력사항

-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 정치외교학과 · 경제학과 동시 졸업
-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졸업 (J.D., 2009)

□ 경력사항

-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연구원 (2006)
-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 (2009)

□ 인사말

안녕하세요.

지난 8월 3일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입사한 정민정 미국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4월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서의 첫 시작을 법무법인 지평지성 해상팀에서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실무 경험과 관련 분야의 이해를 쌓아 경쟁력 있는 변호사로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